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8.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201047	정부	2024. 6. 27.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소위원회 회부
2	일부개정법률안	2201048	김선교의원	2024. 6. 27.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8. 19.)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
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및 지정의 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승인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및 제6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6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으로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의 제목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생략)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u>통보</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생략)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u>통보</u> -----.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략)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중	② ----- ----- ----- -----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
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략)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
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
영 지원)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 통보-----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
영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
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
원-----

-----.

제69조(자료의 제출) 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 ----- ----- ----- -- <u>제출</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